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4. 8. ~ 4. 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4. 1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번	안 호	제3429호
--------	--------	--------

발의연월일 : 2021. 4. 7.

발 의 자 : 이복남 · 남정옥
김미애 · 김영진
의원

1. 개정이유

- 향토유적 보호 관리 계획 조항 신설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향토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 의무 강화
- 순천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관련 조항 일부 개정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향토유적 보호 관리 계획’의 수립 신설 (안 제3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수정
 - 위원 구성 자격 세분화 (안 제4조제4항)
 - 임기 : 연임할 수 있다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4조제5항)
 - 정기회 : 매년1회(4월) → 연 1회 (안 제5조제1항)
 - 의안제출 : 1일전까지 각위원에게 →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 제5조제3항)
- 점검주체 : 시장·읍·면·동장 → 시장
- 포상 관련 조문 조명 및 내용 일부 수정 (안 제19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예산 소요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향토유적 보호 관리 계획의 수립) 순천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지역 향토 유적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천시 향토 유적 보호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 보호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적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중전의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2. 문화재 및 시정자료 업무 담당국장
3. 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중전의 제4조) 제1항 중 “매년1회(4월)” 을 “년 1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일전까지 각위원에게” 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조” 를 “제8조” 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 제1항 중 “시장·읍·면·동장” 을 “시장” 으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8조) 조명을 “홍보 및 포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3조(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순천시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③ (생략)</p> <p><u>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의원 3인이상과 관계공무원 및 학계등 전문인 사중 시장이 위촉한다.</u></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u>연임할 수 있다.</u></p> <p>⑥ (생략)</p> <p>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u>매년1회(4월)</u>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p> <p>② (생략)</p> <p>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u>1일전까지 각위원에게</u>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5조~제7조 (생략)</p> <p>제8조(향토유적 지정) 시장은 제2조 및 <u>제7조</u>의 규</p>	<p>제3조(향토유적 보호 관리 계획의 수립)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 향토유적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토유적 보호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적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조(위원회 설치) ①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④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2. 문화재 및 시정자료 업무 담당국장 3. 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⑤ -----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회 운영) ① ----- ----- <u>년 1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p> <p>제9조(향토유적 지정) ----- <u>제8조-</u></p>

정에 의하여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적으로 지정한다.

제9조~제13조 (생략)

제14조(점검) ① 시장·읍·면·동장은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제17조 (생략)

제18조(계도등)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 취지와 지정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제10조~제14조 (현행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5조(점검) ① 시장-----

②~③ (생략)

제16조~제18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19조(홍보 및 포상) ① -----

②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921호, 2018. 10. 1., 일부개정]

전라남도 순천시(문화예술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02. 15.>

1.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순천시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의원 3인이상과 관계공무원 및 학계등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998. 09. 21., 1999. 08. 28., 2002. 02. 18., 2004. 02. 24., 2007. 01. 09., 2008. 02. 15., 2018. 10. 01.>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4월) 개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민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실비변상) 위원중 순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9.>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적 및 보호구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기타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정기준) 향토유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한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2. 보호 관리함으로서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제8조(향토유적 지정) 시장은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등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적으로 지정한다.

제9조(보호구역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에 대해서는 향토유적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6. 23.>

제10조(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적 지정·해제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서 교부) ① 지정된 향토유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적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리·통장,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향토유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3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향토유적을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향토유적의 지정 현황과 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적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순천시가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진입로 정비 및 경내를 정화하고, 보호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 ① 시장·읍·면·동장은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연2회(3월, 9월) 점검

③ 읍면동은 연4회(2월, 6월, 8월, 11월) 점검

제15조(경비보조등) ① 향토유적 및 보호구역의 관리보존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유적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적을 집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작성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계도등)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 취지와 지정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